#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 지배구조내부규정

2016.10.31. 제정 2018.04.17 개정 2023.07.20 개정 2025.02.03 개정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임원"이란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②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 ③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 제 382 조 제 3 항의 사외이사를 말하다.
  - ④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 3 조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과의 관계) ①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상법」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규정(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 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정관」이 이 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우선 적용한다.

#### 제 2 장 이사회

- 제 4 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매년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 선임한다.
  -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6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 한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지배구조법 또는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7호에 정하는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회사 또는 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기타 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 시켜야 한다.
-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이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025. 02. 03. 본항 신설)
- 제 7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 1 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2.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 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4.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5.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6.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지배구조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25.02.03. 본항 개정)

#### 제 8 조 (이사회 결의 및 보고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및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제 9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지배구조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2018.04.17 본호 삭제)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협의회를 두며, 경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10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진다.
  -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전호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3. 전호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대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 11 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 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회사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 2. 각종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제 4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등(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2 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는 각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2018.04.17 본항 삭제)
  - ③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 4 항의 임기연장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4.17 본항 개정)
  - ④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⑤ 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회사의 자회사,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아니하다 (2018.04.17 본항 개정)
- 제 14 조 (이사의 퇴임) ①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 385 조, 제 434 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 결의에 따른다.
- 제 15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있다.
  - ③ 이사회 소집 및 회의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 7 일 전까지 회의통지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에 따라 소집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2. 제 1 호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 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023.07.20 본항 개정)

-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3 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기타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은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제 16 조 (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17 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주체,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2018.04.17 본항 개정)
  - ② 이사회는 그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2018.04.17 본항 삭제)

###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8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4. 감사위원회
  - 5. 리스크관리위원회
  - 6. 보상위원회
  - 7. 내부통제위원회(2025.02.03. 본호 신설)
  -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19 조 (후보추천위원회)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말한다. 각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각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후보를 정하여야 한다.
  - ④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주 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20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것
  - 2.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할 것
  - ②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21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 후보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 명 이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동 법 제 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 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④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 1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 40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
  - ⑦ 감사위원의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22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 20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 본다.
- 제 23 조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 24 조 (보상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 인 이상을 포함한다.
  - ② 보상위원회는 제 3 항에서 정한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제3항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③ 제 2 항에 기재된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1.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 2.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 2.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 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 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 제 24 조의 2 (내부통제위원회)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내부통제협의회 운영현황 및 협의 사항
- 2.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02.03. 본조 신설)
- 제 25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주체,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18.04.17 본항 개정)
  - ② 이사회는 1 항에 의해 평가된 결과를 보고 받고,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2018.04.17 본항 개정)

#### 제 4 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제 26 조 (내부통제기준)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KB 금융지주가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회사는 내

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3.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임원 및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의 구분 에 관한 사항
  - 4. 내부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 5. 내부고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7.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 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에 관한 사항
  - 9.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 10.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 11. 이해상충의 파악 · 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 13.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 27 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지배구조법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 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 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마.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여 신금융협회,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 29 조 (위험관리기준)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KB 금융지주가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 2.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3.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 5.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위험관리조직구조와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 7.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 8.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위험관리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9.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0.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 11.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12.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13.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 15.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나.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다.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 · 운영
  - 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
- 제 30 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 27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지배구조법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 31 조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회사의 겸영(兼營)업무
  -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
    - 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내부통제 업무
    - 나. 준법감시인의 경우 위험관리 업무
- 제 32 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 5 장 임원에 관한 사항

- 제 33 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 6 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2025.02.03. 본항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 6 조 및 제 7 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25.02.03. 본항 신설)

- 1.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5.02.03. 본항 신설)
- ④ 제 6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⑤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 6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제 34 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 33 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 및 해임한 경우에는 제 54 조에 의거, 공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
- 제 35 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이하 "전략기획담당임원"이라 한다)
  -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이하 "재무관리담당임원" 이라 한다)
  - 3.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 업무(이하 "리스크관리담당임원" 이라 한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6 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규정」 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규정」 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④ 리스크관리담당임원은 「리스크관리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관할부문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임전결 규정 상의 권한을 영위한다.
- 제 37 조 (겸직제한) ① 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② 다른 법령, 지배구조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1. KB 금융지주의 임직원이 KB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2. KB 금융지주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2 항의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제 38 조 (겸직 숭인 및 보고 등)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제 37조제 2 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1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겸직의 목적, 겸직의 기간,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등 비상근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지배 구조법 제 10 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에는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KB 금융지주와 당사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 1 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KB금융지주와 당사가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 3. 그 밖에 KB금융지주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 39 조 (대표이사 선임 절차) ①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KB 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2018.04.17 본항 개정)
  -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제 13 조제 1 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0 조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절차)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 년 단위로 재계약 및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외)는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되,1년 단위로 재계약 및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 ④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 41 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신임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 42 조 (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회사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회사의 임직원만 해당한다)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경영숭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 43 조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① 성과측정 지표로는 재무지표, 개별 KPI 및 비계량 평가 등을 활용한다. 다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② 단기성과급 관련 평가대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장기성과급의 평가대상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성과평가 결과는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에 반영한다.
- 제 44 조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①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은 이사보수규정 및 집행임원운영규정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수는 기본급과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된다.
  - ② 단기성과급은 기본급에 개인별 성과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③ 장기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성과연동주식 수량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 ④ 사외이사에게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급과 회의참석에 따른회의비를 역할 및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다.

#### 제 6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 제 45 조 (최고경영자 경영숭계 원칙)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은 KB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 원칙을 따른다.
  - ③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계열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하여 운영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KB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에서 정한다.
- 제 46 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숭계 지원) ①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
  - ② 회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2.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KB금융지주의 필요한 업무 지원
    -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제 47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
- 제 48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선임 절차는 제39조에 따른다.
  - ②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 ③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 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 49 조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2018.04.17 본조 개정)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제 50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최고경영자의 권한 위임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명시한다.
  - ④ 기타 세부사항은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공시

- 제 51 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손해보험협회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 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 3.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지배구조법 제13조에 따른 선임에 대한 이유
  - 4.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가. 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 라.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 마.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후보추천 관련 사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구성 및 활동내역
- 7. 보상위원회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 다.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 라.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 마.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바.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사.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아.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자.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 8.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구성 및 활동내역
- 9. 사외이사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 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지배구조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 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 의 비영립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10.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 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11. 주주현황 및 주주총회 개최현황
-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52 조 (지배구조내부규정) 지배구조내부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손해보험협회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 53 조 (이사회의장의 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 54 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자격요건 적합 여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에 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지체 없이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 등을 <u>회사</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5 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 가 종료된 날부터 5영업일 내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 수
  - 2. 안건별 찬 · 반 주식 수 비율
  - 3. 주주의 참석률
  - ② 회사는 주주가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부 칙(2016.10.3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18조 1항 및 제6장의 대표이사후 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설치 이후부터, 그 외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서 세부 조문 별로 시행 시점이 유예된 항목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그에 따른다.

# 부 칙(2018.4.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4.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7.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7.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2.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2.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3항,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시행한다.